

등록번호	재무과-13358
등록일자	2015.9.4.
결재일자	2015.9.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지출팀장	재무과장	기획재정국장	
김보민	최승로	김순희	전결 09/04 박진석	
협 조	인사팀장 총무과장	문영일 김종석		

2015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계획



기획재정국
재무과



2015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계획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제3항에 의거, 「15년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함.

I 지급 근거
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제3항

II 지급 대상

- 지급대상 : 지급기준일(추석 2015.9.27.)현재 재직중인 공무원
(※ 연봉제 적용대상자, 실무수습, 공무상 질병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, 직위해제·정직기간 중인 공무원 제외)
- **지급기준일 및 지급액**

지급기준일	지급액
추석 (2015. 9. 27)	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 × 60%

-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이라 함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금액임. 다만,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금액으로 함.

※ 강등된 사람의 월봉금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함.

- **지급방법 : 개인별 수당계좌로 대량이체**

- 월중 인사 발령시(신규채용, 퇴직, 승진, 승급 등 각종 임용)는 지급기준일 (추석)을 기준으로 결정

Ⅲ 추진 일정

- '15년 명절휴가비 지급안내 전부서 통보 : '15.9.8(화)
- 명절휴가비 지급조서 재무과 제출 : '15.9.11(금)
- 급여시스템 입력 및 자료확인 : '15.9.14(월)~9.15(화)
-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 : '15.9.21(월)

Ⅳ 소요 예산

- 지급예정액 : 총 1,636,803천원
- 예산과목

【일반회계】

- 총 무 과 : 행정운영경비(총무과),인력운영비,인력운영비(구·동직원),인건비,보수/기타직보수
- 건강도시과 : 행정운영경비(건강도시과),인력운영비,인력운영비,인건비,보수
- 의회사무과 : 행정운영경비(의회사무과),인력운영비,인력운영비,인건비,보수

【특별회계】

- 주차관리과 : 행정운영경비(주차관리과),인력운영비(주차장특별회계),인력운영비,인건비,보수

Ⅴ 행정 사항

- 전부서 서무담당은 9.11(금)까지 명절휴가비 지급조서를 재무과에 제출

명절휴가비 지급 예시

〈 추석이 9월 27일인 경우 〉

- 9월 27일 이전의 신규채용 : 지급함
- 9월 27일 이전의 퇴직 : 지급하지 않음
- 9월 27일 이후의 신규채용 : 지급하지 않음
- 9월 27일 이후의 퇴직 : 지급함
-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, 정직기간에 9월 27일이 포함될 경우 : 지급하지 않음
- 9월 27일 이전의 승진 : 승진된 계급·호봉 월봉금액 기준
- 9월 27일 이후의 승진 : 승진되기 전의 계급·호봉 월봉금액 기준

예시

- 설날,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 여부
 -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
-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9월 17일 9급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, 이 직원이 9월 20일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추석이 9월 27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
 -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·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금액의 60%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
-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
 -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, 강등(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)·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추석이 9월 27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
 -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(설날·추석)이므로 전액 지급함